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 제도 분석·평가의 적실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및 심의 대상 조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안 제20조 및 별표)

- 1)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질병 및 의료기관 이용, 의료급여 중 급여 유형 및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서비스 관련 정보 추가 수집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중 장기요양판정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여부 등 추가 수집
- 3)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국민취업제도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일자리 지원 관련 정보 추가 수집
- 4)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졸업 정보(학적정보) 신규 수집
- 5) 퇴직연금·주택임대차계약 등 자료수집 규정 명확화
- 6)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수집 근거 신설

나.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추계결과의 관계부처 통보 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 (안 제2조)

다.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및 위원 구성 변경(안 제11조)

1) 실무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①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추가

2) 실무위원회 위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으로 변경

라.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 전문
위원회로 분리 (안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를 “재정추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고”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국무2차장”을 “차장”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복수차관”을 “복수 차관 또는 차장”으로, “차관으로”를 “차관 또는 차장으로”로 한다.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제4호 중 “재정·통계”를 “재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③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1) 제1호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6) 중 “징수”를 “징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호 나목5)를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1)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부터 19)까지를 각각 11)부터 21)까지로 하고, 같은 목 2)부터 8)까지를 각각 3)부터 9)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 및 10)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관한”을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로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및 본인부담상한액,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 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수월액·소득월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보상금·본인부담상한액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

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구인·구직 정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등,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별표 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참여에 관한 정보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 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 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 일까지 <u>법 제20조에 따른 사회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 세 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재정추계세부지침에는 재 정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 체계, 공표방법·절차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 ----- ----- ----- ----- <u>재정추계</u> ----- ----- ----- -----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 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u>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 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② ----- ----- ----- ----- <u>법</u> <u>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u> <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고</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
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
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
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
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
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
가보훈처 차장. 이 경우 복수

② -----

-----.

1.·2. (현행과 같음)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
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차장 -----
----- 복수

<u>차관</u>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u>차관</u>으로 한다.	<u>차관 또는 차장</u>----- ----- <u>차관 또는 차장으로</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재정·통계 전문위원회</u> <u><신설></u>	4. <u>재정</u> ----- 5. <u>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u> <u>회</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⑤ (생략)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 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기구로 한다.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 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

공 요청) ①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신설>

5. ~ 8. (생략)

② (생략)

<신설>

공 요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3711